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71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김남근 · 민병덕 · 이강일
남인순 · 박주민 · 강준현
김현정 · 김승원 · 김우영
이인영 · 박찬대 · 김남희
유동수 · 한창민 · 염태영
박범계 · 최혁진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거나 신고 과정에서의 행위가 문제되어 오히려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최근 쿠광의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형사고소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제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공익신고가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줌.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이행

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함. 최근 5년간 보호조치 미이행이 확인된 52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보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한정된 법률 위반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먼저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여 보호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고,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불안 없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된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 나. 공익신고자등의 정의에 조력한 자를 추가하고,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

의 민·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아목 신설).

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함(안 제6조 제6호 신설).

라. 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확대된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넓힘(안 제8조의2제2항).

마. 조사기관 등이 수사·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내용 전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바.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함(안 제14조).

사. 공익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아. 보호조치 결정 시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보복 목적의 소송으로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자.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며, 부과를 의무화하고,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차.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함(안 제22조의2 신설).

카. 불이익조치 추정 요건 중 신고 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신고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안 제23조).

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파.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신고자와”를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인,”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이에 조력한 사람,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할 목적으로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 고발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제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회의원

6. 지방의회의원

제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제6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중 “수사결과”를 “수사결과와 그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지를”을 “내용(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와 사유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회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사기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우, 신고의 경위 및 동기, 공익 기여의 정도,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⑪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은 신고의 경위, 공익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접수된 신고가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를 각하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공익신고등을 준비한 공익신고자등이 언론에 제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을 “제2조제6호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지”를 “금지(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을 “제2조제6호자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보복 목적 소송의 각하 등) 법원은 공익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소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4(보복 목적의 형사고소·고발에 대한 처리)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이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고

소·고발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회”를 “3회”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 신청인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①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6조의2 본문 중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30으로”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을 “제2조제6호자목 및 차목”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사목”을 “아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u>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u>	1. ----- ----- --- <u>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u> ----- ----- -----.
가. <u>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u>	<삭 제>
나. <u>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u>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공익신고자등”이란 <u>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u>	5. ----- <u>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인,</u> ----- ----- <u>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이에 조력한 사람,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u> -----.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 사. (생략) <u><신설></u> <u>아.·자.</u> (생략) 7. (생략)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5. (생략)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생략)	6. ----- ----- -----. 가. ~ 사. (현행과 같음) <u>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할 목적으로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고발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u> <u>자.·차.</u> (현행 아목 및 자목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6조(공익신고)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국회의원</u> 6. <u>지방의회의원</u> 7. (현행 제5호와 같음)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 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제6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수사결과와 그 사유 ----
-----.

⑥ -----

----- 내용(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와 사유를 포함한다)을 -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⑦ ~ ⑨ (생략)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들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들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들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 ⑦ (생략)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들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징계 등이

-----.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

----- 면제하
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요구하여야 한다. -----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
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
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관련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
다.

⑨ 위원회는 공익신고등과 관련
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
가 발견된 경우 담당 수사기관
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수사기관은 공익신고등과 관
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
위를 수사하는 경우, 신고의 경
위 및 동기, 공익 기여의 정도,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⑪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
신고자등이 민사상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경우, 법원은 신고의
경위, 공익 기여의 정도 등을 고
려하여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에 대
하여 접수된 신고가 제2조제6호
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행위

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 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
----- 금지(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② -----
----- 제2조제6호자목 또는 차목-----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보복 목적 소송의 각하 등) 법원은 공익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제2조 제6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소송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

<신 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4(보복 목적의 형사고소

· 고발에 대한 처리)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형사고소

· 고발이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고소·고발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

----- 5천만원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3회 -----

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 설>

-----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 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

-----.

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 신청인이나 불이익조치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금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①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

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

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

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

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

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

기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

이익조치를 한 경우

3.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

액은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중대 금액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

제27조(구조금)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2조제6호자목 및 차목--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아목 ----

한 자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